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09 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박성훈

조승환 · 김소희 · 고동진

이인선 • 이종배 • 정동만

임이자 • 박충권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・社團體)를 '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'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또,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(안 제33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4(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體)에 대하여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(이하 "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"이라 한다)을 할수 있다.
  -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에 국가보 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 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및단체 등지정의 기준·절차, 유효기간,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3조의4(고용 우수 기업 및 단
	체등의 지정) ① 국가보훈부장
	관은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
	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취업지
	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
	있는 공・사기업체(公・私企業
	體) 또는 공・사단체(公・社團
	體)에 대하여 고용 우수 기업
	및 단체등의 지정(이하 "고용
	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"이라 한
	<u>다)을 할 수 있다.</u>
	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
	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으
	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
	신청하여야 한다.
	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
	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
	<u>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</u>
	<u>갖춘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</u>
	사단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

및단체등지정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.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 정을 받은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

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

하여야 한다.

- 2.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 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
-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 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

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 업및단체등지정의 기준·절차, 유효기간,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